



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2020-보건18호

춘포초등학교 교장실 842-8213. 교무실 842-8211. 행정실 842-8212, FAX 842-3448

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.10.13.부터 10만원 이하(관리자·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)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적용시간: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※ 단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 부여

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~4호, 제83조

과태료 부과권자: 행정명령권자(질병관리청장, 시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

▣ 과태료 부과 기준

과태료 부과 대상	내용
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다중이용시설 등 : 집합제한 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(핵심방역수칙 의무화)시설의 사업주·종사자·이용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 ▶ (대중교통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 ▶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 ▶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 ▶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마스크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▶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※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: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음식 조리 중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착용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♣ 과태료 부과 대상 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-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
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	내용
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▶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▶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흡연 시(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, 음식물 섭취에 해당 됨)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 됨 ▶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(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) ▶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▶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▶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, 방송국 스태프,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함) 및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, 사적인 사진 촬영은 포함되지 않음), 수어통역을 할 때 ▶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▶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▶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 ▶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과태료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(마스크 미착용)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▶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1/2 범위에서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※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과태료 부과 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▶ 납부기한: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

※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, **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**이므로,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.

2020년 10월 22일

춘포초등학교장

○ **(실내) 마스크 상시 착용**

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

○ **(실외) ①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(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),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**

○ **실내·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**

- 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

※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, 기저질환자,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,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

-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■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■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안에서 있을 때

■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■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■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 하며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) 및 사진 촬영(촬영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■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■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■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<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>

○ (KF94 이상)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
○ (KF80 이상) 기침,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/ 노인,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,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○ (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)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, 더운 여름철, 호흡이 불편한 경우

○ 보건용·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(천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



KF94 마스크 ·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
KF80이상 마스크

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건강취약계층^①과 기저질환자^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

-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·더운 여름철·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
① 건강취약계층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

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

미세입자 차단

호흡 용이성



마스크 착용 전
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
틈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

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걸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



마스크 선택법

식약처가 허가한 **의약외품**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

마스크 폐기법



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

※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